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051-330-3456

[busanhanbumo.or.kr](http://busanhanbumo.or.kr)

우리 아이와의 소중한 만남

# 면접교섭 길라잡이



부산시 북구 효열로 256, 3층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금곡동,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Contents

## Part 1 면접교섭 길라잡이

면접교섭이란?	03
건강한 면접교섭이 되려면?	04
자녀 연령별 면접교섭	06
면접교섭 관련 Q&A	11

## Part 2 서비스 이용 안내

면접교섭서비스 이용 안내	12
면접교섭서비스 이용 규칙	14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안내	15

참고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2016) 비양육부모 길라잡이 / 양육비이행관리원(2017) 양육부모 길라잡이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9) 면접교섭 매뉴얼



## 면접교섭이란?

면접교섭은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고 전화 통화 및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면접교섭은 왜 필요할까요?

“이혼은 배우자와의 이별이지, 자녀와의 이별은 아닙니다.”

면접교섭을 통해 부양육부·모\*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것은 자녀의 정서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놓인 자녀들에게 면접교섭은 매우 중요한 만남입니다. 양쪽 부모와의 안전한 관계가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 양육에서 배제되는 어감인 비(非)양육부·모라는 용어대신 공동양육·양육협력을 의미하는 부(副)양육부·모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 건강한 면접교섭이 되려면?

### 1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웁니다.

면접교섭은 반드시 자녀의 입장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계획이 세워졌다면, 자녀와 약속한 대로 면접교섭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함께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는 아이를 자주 보고 싶다는 지금의 마음만으로 무리하게 면접교섭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면접교섭을 하려고 하면, 바쁜 직장생활과 자녀의 일정 때문에 애초의 계획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면접교섭일이 자주 바뀌게 되는데, 부양육부·모의 상황에 따라 면접교섭일이 자주 바뀌게 되면 자녀는 부양육부·모와의 만남을 예측할 수 없게 되고,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자녀를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녀는 부양육부·모가 자기를 보고 싶어 할 것이라는 믿음도 부모에 대한 신뢰감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면접교섭은 자녀의 일정과 마음을 고려하고, 서로 의논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2 계획이 변경되면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합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약속하면, 어떻게든 약속한 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약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양육부·모와 자녀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양육부·모를 기다리던 자녀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다시 자녀와의 면접교섭 약속을 정할 때에는 자녀의 상황을 잘 고려하고 양육부·모와 의논해서 정해야 합니다.



### 3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면접교섭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격주로 토요일 15:00부터 다음날 15:00까지 면접교섭을 한다.”와 같이 정기적인 만남을 정할 수도 있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에는 같이 숙박을 하거나 여행을 갈 수 있다.”와 같이 비정기적인 만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자녀를 데려다주고 또 데리러 올 것인지, 약속을 변경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하면 면접교섭과 관련한 양육부·모와 부양육부·모 사이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편지 교환이나 문자, 전화 주고받기, 학교행사 참석(특히 입학식과 졸업식, 학부모 참여수업 등), 사진 및 선물 교환, 경조사 참석 등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자녀 연령별 면접교섭



### 영유아기

#### “양육자와 떨어지는 것이 무서워요.”

자녀가 어려서 양육부·모가 함께 동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양육부·모와 자녀를 억지로 분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자녀가 불안감을 느끼며 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동반한 양육부·모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면접교섭의 시간도 처음에는 1시간, 차츰 익숙해지면 2시간, 3시간씩 점점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장소도 자주 변경하지 않도록 하여, 자녀가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가 낯가림이 심하다는 이유로, 날씨가 춥다는(덥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면접교섭을 미루다 보면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양육부·모를 만나지 못할 때 자녀가 받을 심리적인 상처는 자녀가 성장한 후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츰차츰 정기적인 면접교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외)조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면접교섭을 할 때 (외)조부모가 함께 동반하는 것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영유아기 자녀를 면접교섭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때에는 전문가나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천 면접교섭 장소

- ☑ 자녀에게 익숙한 곳(양육자의 집), 키즈 카페, 놀이터, 어린이 소극장, 놀이동산 등



### 양육자 유의사항

- ☑ 일관된 양육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양육부·모의 스트레스로 인한 지나치게 엄격한 훈육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 죄책감으로 인한 무조건적 허용은 옳지 않습니다. 훈육해야 할 상황에서는 폭력이나 욕설이 아닌 적절한 방법으로 훈육해야 합니다.





## 아동기

### “엄마 아빠와 다시 함께 살고 싶어요.”

부양육부·모와 양육부·모 모두 자녀의 면접교섭에 적극적이라고 해도, 때로는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의 마음을 살펴보면 한쪽 부모와 시간을 보내는 면접교섭보다는 양쪽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쪽 부모를 만나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혹시 다시 함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자녀에게 부모가 이혼을 해서 따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러한 이유로 동시에 만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한순간에 내린 결정이 아니라, 많은 노력 끝에 내린 현명한 선택임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부모의 이러한 결정으로 두 지붕의 생활을 하겠지만, 자녀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추천 면접교섭 장소

- ☑ 자녀의 취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곳(수영장, 게임장, 놀이동산, 문화체험관, 영화관, 공연장), 여행 등
- ☑ 반드시 이벤트 형식의 만남 장소일 필요는 없음
- ☑ 주말 동안 부양육부·모의 집에서 숙제를 함께 할 수도 있음



### 양육자 유의사항

- ☑ 이혼한 전배우자가 싫더라도, 자녀들이 부양육부·모를 만나 기뻐하는 것과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것을 방해하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 ☑ 자녀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도록 자녀의 관심사를 주제로 소통합니다.  
예) 이혼 과정 중 본의 아니게 소홀하였던 자녀의 생활에 대해 관심 갖기, 자녀가 좋아하는 친구, 연예인, 노래나 취미활동을 주제로 대화하기

## 청소년기

### “제발 좀 그만 싸우세요.”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그 시간을 가져도 좋고, 상담 전문가와 함께 하여도 좋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청소년기 자녀들은 어른이 되어 직업과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이혼과 자신의 비전(미래의 상황) 찾기는 별개의 문제임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떨어져 지내고 있는 부양육부·모와 어떤 시간을 가지면 좋을지 정확히 표현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면접교섭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천 면접교섭 장소

- ☑ 자녀가 원하는 곳



#### 양육자 유의사항

- ☑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는 시기임을 이야기해줍니다.
- ☑ 진로계획과 학업성취가 중요한 시기이므로, 학업 동기가 형성되도록 청소년 관련 단체나 지역 커뮤니티 등의 멘토링 기회를 적극 활용합니다.



## 면접교섭 관련 Q&A

### ☑ 집행권원은 무엇을 말하나요?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즉,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면접교섭과 관련하여서는 면접교섭 사항에 대해서 명시된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등을 말합니다.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는 면접교섭에 관한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근거하여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나 비양육부·모가 면접교섭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 ☑ 양육비를 주지 않는데도 면접교섭을 꼭 해야 하나요?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모두 자녀의 권리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거나,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각각에 대해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7조의 2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 중 일방이 교도소에 있거나 지속적인 학대 위협이 있거나 혹은 자녀가 비양육부·모를 면접교섭하는 것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유발하는 합당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서비스 이용 안내

부모와 자녀의 소중한 만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면접교섭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 면접교섭서비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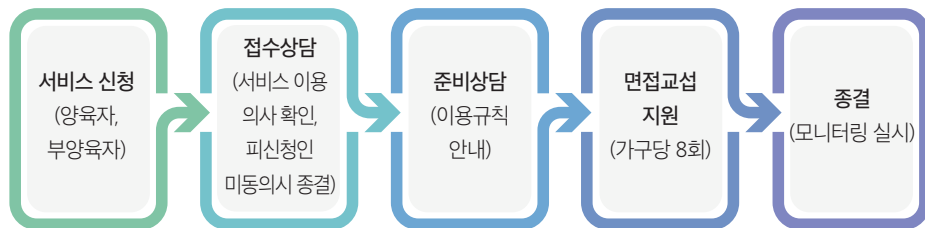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문가(면접교섭 담당자, 상담위원)의 개입으로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구분	지원횟수	이용대상	내용
개별 면접교섭	가구당 8회 (1회 60분)	양육부·모, 부양육부·모, 미성년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교섭 갈등 중재를 위한 상담</li> <li>• 협력적 부모역할을 위한 (부)양육부·모 심리상담 및 부모교육</li> <li>• 안전한 공간에서 부양육부·모와 자녀의 만남 지원</li> <li>• 부양육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평가와 개입</li> </ul>
집단 면접교섭	기관 운영 일정에 따라 별도 안내	부양육부·모, 미성년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육부·모와 자녀 친밀감 향상 집단상담</li> <li>• 문화체험 프로그램</li> </ul>

※ 서비스 이용은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가정의 상황에 맞게 개별 혹은 집단면접교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중복 참여 가능).

### ☑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접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메일접수 bsspfamily@naver.com</li> <li>* 방문 접수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북구 금곡동 소재)</li> <li>* 우편 접수 (46510)부산시 북구 효열로 256, 3층 건강가정지원센터 (면접교섭 담당자 앞)</li> </ul>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교섭지원 신청서 홈페이지(busanhanbumo.or.kr) &gt; 알림공간 &gt; 자료실</li> <li>*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통, 가족관계증명서(자녀) 1통</li> <li>* 면접교섭 합의서(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등) 1통</li> <li>※ 신청서류는 양육자와 부양육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li> </ul>
이용 문의	* 051-330-3456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 ☑ 시설 안내



면접교섭실



상담실(양육자 대기실)

### ☑ 서비스 이용 후기

- 이혼 이후 시간이 흘러갈수록 면접교섭 시간과 장소가 잘 협의되지 않아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에서 아이가 엄마와 만나는 동안 상담선생님이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아이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살 아들을 키우는 아빠-
- **아빠랑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딸이 행복을 많이 느낍니다.** 1박 2일 캠프를 통해 딸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9살 딸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아빠-



## 면접교섭서비스 이용 규칙



### 공통

- 약속된 시간을 준수합니다.
- 단정한 복장으로 방문하며, 서비스 참여 전 음주 및 약물 복용을 하지 않습니다.
- 면접교섭 일정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약속된 면접교섭 해당일 일주일 전에 미리 연락하고 조정하여야 합니다.
- 면접교섭 도중 상해, 심한 폭언, 자녀 탈취 등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면접교섭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면접교섭 담당자 및 상담위원의 안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면접교섭의 이용이 제한·중단될 수 있습니다



### 양육부 모

- 원칙적으로 양육부·모가 자녀와 센터에 동행하여야 합니다.
- 자녀에게 필요한 용품(기저귀, 우유, 젓병, 물티슈 등)은 양육부·모가 직접 가져와야 합니다.
- 자녀의 건강 상태와 약 복용, 알레르기 등에 관한 특이사항 등 자녀의 신체 건강과 안전에 안전에 관한 고려 사항은 면접교섭 회기 전 면접교섭 담당자나 면접교섭 상담위원에게 미리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부양육부 모

- 대리인이 동반할 경우 사전에 면접교섭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어 확인된 대리인을 통해서만 면접교섭이 진행됩니다.
- 면접교섭 중에 자녀에게 상대방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장난감, 음식, 선물 등을 면접교섭실 내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안내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맞춤 서비스와 지원 정보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문의 : 051-330-3456)



### 양육비 상담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 정부지원 안내
- 양육비이행 법률 지원을 위한 상담



###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 한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양육코칭
- 소통 창구가 되어줄 자조모임
-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
- 멘토 한부모와의 1:1 만남, 생활코디네이터



### 면접교섭 서비스

- 부양육부·모와 자녀의 만남 지원
- 부모·자녀상담, 양육 및 놀이코칭 등



### 생활정보 안내

-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등 주거정보 안내
- 한부모 자립을 위한 교육, 취업 정보 안내

☑ 이용 안내 평일 09:00~18:00 ※토요일 예약운영



☎ 전화상담 051)330-3456

☞ 방문상담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시 북구 효령로 256, 3층)

💻 온라인상담 busanhanbumo.or.kr

☞ 협력기관 방문 상담 ※지정요일 오후 2~6시

☞ 동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